

2.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중 개정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471호 1997. 1. 8.

제7조의 본문중 “31,000원으로”를 “33,000 원이내로”로 한다.

제7조의2의 본문중 “동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하는 국비와 당해 연도의 검증수수료로 확보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정한다.”를 “동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0퍼센트이내에서 매회계년도마다 보조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의2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당해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조사

총필지수÷당해 시·군·구별1표준지당
개별필지수×당해연도1표준지의 조사·
평가 보수액

2.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당해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필지수
×당해 연도1표준지의 조사·평가 보수
액×50%

3.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당해 시·군·구별 이의 신청 총필지수
×당해 연도1표준지의 조사·평가 보수
액×50%

-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